

의 정 정 보 2011-4호

1.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2
2.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49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92
5. 행복한 책읽기 112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 [식품산업진흥법 \(38\)](#)
- [친환경농업육성법 \(4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50\)](#)
-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56\)](#)
-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66\)](#)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71\)](#)
-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76\)](#)
-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81\)](#)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93\)](#)
-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 실시 \(98\)](#)
-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계약 편리해진다 \(102\)](#)
-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105\)](#)
- [3월부터 다문화가정 집에서 직접 정보화교육 \(110\)](#)

행복한 채워기

- [뉴욕, 비밀스러운 책의 도시 \(112\)](#)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1.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3. 식품산업진흥법 38
4. 친환경농업육성법 40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3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공포 2011. 3. 8 시행 2011. 9. 9]

1. 제정 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1)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1)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구조대를 편성·운영함.
- 2)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함.

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안 제25조)

- 1)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문구조·구급대원을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설치(안 제27조)

- 1)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 2)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방재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방재청장등은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

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

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제5장 보칙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포 2011. 3. 7 시행 2012. 3. 9]

1. 제정 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 2)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내용에는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포함되도록 함.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 전에 허가부서가 아닌 재난관리부서에서 사전재난영향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도시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사전 재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안 제9조)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양한 양태의 위험과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건축물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2)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1) 초고층 건축물등 및 관계지역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리주체가 여럿인 경우 재난발생 시 공동대응 등 재난의 예방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함.
- 2)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방화관리,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각각의 안전점검을 통

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안 제16조 및 제17조)

초고층 건축물등에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에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등 건축물의 방범·보안·테러·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가 가능하도록 함.

마.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안 제19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 반출·입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위험물질”이란 유독물·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법·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과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

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회의 구성·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 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시설검사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

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법·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법·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

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 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사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벌칙)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주체는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설의 설치·운영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공포 2011. 3. 9 시행 2011. 3. 9]

1. 개정 이유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 원료를 하는 식품을 포함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1) 식품산업과 어업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서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로 변경함.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범위, 류협력사업의 생산자 범위 등의 관련 규정에서 “농업”은 “농어업”으로 “농산물”은 “농수산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수산분야를 추가함.

나. 인증품 우선구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안 제32조제3호의2 및 안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산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3. 9 시행 2011. 9. 10]

1. 개정 이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보완
(안 제17조의6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3)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대한 준수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

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안 제20조의3,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등 신설)

-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
- 3)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0조의4 신설)

- 1)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3)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3. 9 시행 2011. 9. 10]

1. 개정 이유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산행문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 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숲길 용어의 신설(안 제2호제5호 신설)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함.

나. 숲길안내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11조)

그 동안 등산 등 휴양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등산안내인제도를 폐지하고,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며 숲길을

관리하게 하기 위한 숲길 종류별 안내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행문화 생성에 따른 국민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숲길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각종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숲길의 종류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숲길을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함.

라. 숲길의 조성 및 관리(안 제22조의3 신설, 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1)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악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시행성과 사회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2)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3)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 4) 숲길이나 주변에서의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이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금지함.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공포 2011. 3. 9 시행 2011. 3. 9]

1. 개정 이유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안 제1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제22조제4항 신설)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

다.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 폐지
(안 제27조제2항 단서 삭제, 부칙 단서)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함.

라. 부당이득금 징수 및 지급제한 강화(안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 함.

마.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1.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50
2.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56
3.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66
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71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76
6.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81

1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 이유

- 도내에서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붕괴를 막고 피해농가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강원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안 제4조~제9조)
- 가축방역관 자격 및 임명·위촉 등(안 제10조~제11조)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안 제12조~제14조)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붕괴를 막고 피해농가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강원도 가축방역협의회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의 경계지역 내·외로의 반입 또는 반출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강원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가축방역관

제10조(가축방역관의 자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원도 소속 공무원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제11조(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장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제12조(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관리)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축산물 위생관리를 포함한다)에 지장이 없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방역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소요액을 재원별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교부 전이라도 도비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으로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등의 조기 회생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시책 외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등)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 주요시책 및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 및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계절적 강수량, 빗물흐름속도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시책추진) ① 도지사는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 그 밖의 산업에 필요한 적정용수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빗물활용 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시상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건의 및 권고) ①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 경기도의원 및 수질·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4, 2007.7.2, 2008.9.26, 2009.4.21, 2009.9.9, 2009.11.20, 2009.12.15>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우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휴양시설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26.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②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침투(浸透)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 다. 침투트렌치
- 라. 투수성 포장
- 마. 투수성 보도블럭 등

2. 저류(底流)시설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나. 운동장저류
- 다. 공원저류
- 라. 주차장저류
- 마. 단지내 저류
- 바. 건축물 저류
-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 아. 유지·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③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9.26>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배수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1. 제정 이유

-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명예의 전당에 헌액 대상자의 자격요건 명시함(안 제4조)
- 전당에 헌액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도지사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대해 각별한 예우를 해야함(안 제9조)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당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사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여야 한다.

1.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자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당에 현액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단위 기관단체장
 3. 관련업무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현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현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자를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당 현액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전당 현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당 현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기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등재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증서

20○○ - ○○

경기도 CI

명예의 전당 증서

소속(주소) : ○ ○ ○
이 름 : ○ ○ ○

귀하의 명예롭고 훌륭한 업적을 전 경기도민이
영원히 간직하고 기리고자 **경기도 명예의 전당**
증서를 드립니다.

20○○년 ○○월 ○○일

경기도지사 ○ ○ ○



1. 제정 이유

-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6%가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필요성 증대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강질환 예방·진단 및 의치보철 등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도지사에게 구강보건사업 실시 및 자료조사·인력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도지사에게 매년 노인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도지사가 세부계획 수립 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해당 연도별 구강보건사업 분석·평가 후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에 참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바. 구강보건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와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치아세정·치석제거 등의 지원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
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구강보건사업 절차 및 추진방향

2.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3.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잇솔질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관리)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 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소상공인 등의 효율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비즈니스 하우스의 설립 목적,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비즈니스 하우스를 임대 또는 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운영의 주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운영비는 수익재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이하 “비즈니스 하우스”라 한다)는 경남도내에 둔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군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비즈니스 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기업 활동 지원
2.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① 비즈니스 하우스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비즈니스 하우스의 위탁 대상 법인, 위탁 기간,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지원 등) ①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비는 비즈니스 하우스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도지사가 비즈니스 하우스를 직영하는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두되, 그 기능은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규정의 유예)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운영 시기에 맞춰 정한다.

□ 관 련 법 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 이유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함.

다. 위원회 설치(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도시텃밭 조성 등(안 제13조)

-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4조)

-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으며,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이도록 함.

바. 보조금의 지원(안 제17조)

-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등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나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시텃밭 조성 등) 시장은 각종 유흥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교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 3. (생략)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생략)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

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지 방 자 치 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복지에 산 누수 막는다 93
2.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고지 실시 98
3.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계약 편리해진다 102
4.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105
5. 3월부터 다문화가정 집에서 직접 정보화교육 110

1. 복지에산 누수 막는다

-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3월 28일 개통된다.
 - 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3월 28일 개통되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이 시스템에는
 - 첫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하여,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복지사업 현황 정보 제공기능’,
 - 둘째,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심사시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 정보 조회기능’,
 - 셋째,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민원인이 제출

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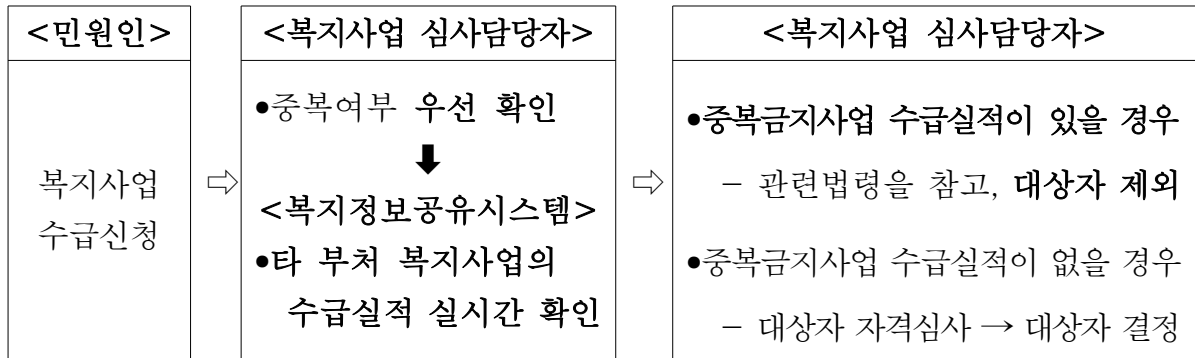
* 구비서류 감소 : 69종 → 17종 (52종 감소)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상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도 모두 조사·분석하여 DB화하고, 기존의 정부포털들을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보 종합제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중복수급예방 사례

□ 복지사업 중복수급 예방 (사전적 예방)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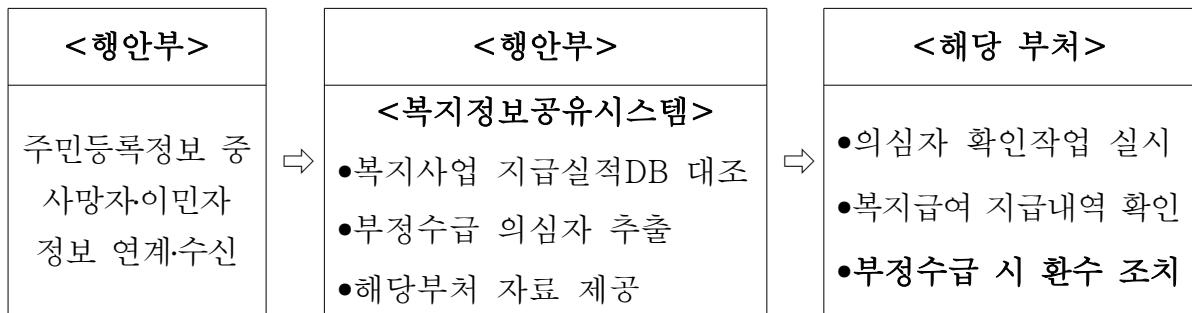
<사 례>

- 국가유공자인 “유○○”씨는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복지사업 수급자로 선정되어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던 중, 최근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보훈지정 민원실을 찾아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 보훈처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인 “심○○”주무관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유공자”씨의 타 부처 복지사업 수혜이력 확인한 결과, 복지부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지침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사업과 중복수급이 금지된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인 “심○○”주무관은 “유○○”씨에게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복지사업은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사업과 중복수급이 금지된 사업임으로 신청대상자가 아님을 설명하였다.
- 보훈처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인 “심○○”주무관은 예전에는 타

부처 복지급여 수급사실을 몰라 신청자격만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제는 즉석에서 타 부처 수혜이력 여부 확인할 수 있어, 복지사업의 중복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예방 (사후적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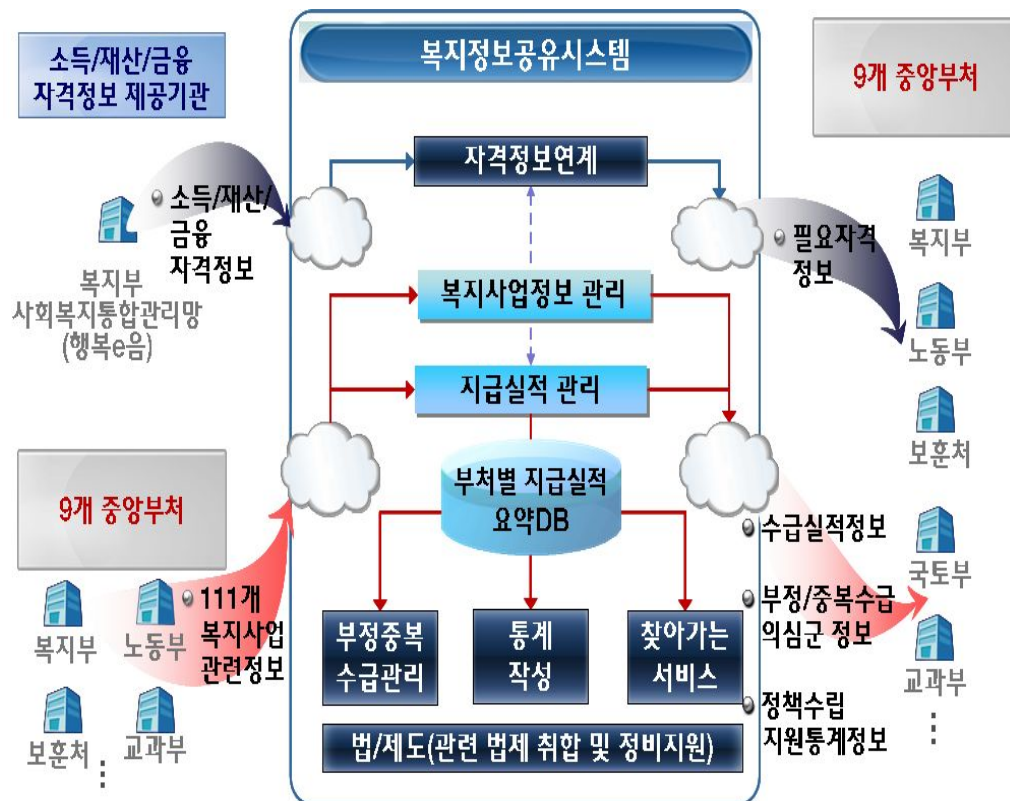
<업무 흐름>



<사 례>

-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정보 분 사망자 및 이민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부처 복지사업 지급실적DB와 대조 작업을 실시하여 사망되었거나, 이민간 사람이 계속해서 복지사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즉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추출하여 해당부처에 통보한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지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당 부처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이 정당한지 복지급여내역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복지급여 대상자는 즉시 복지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간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등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복지정보공유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내용, 지급 실적, 수급자 선정정보(자격정보) 등을 연계 제공하는 복지업무지원시스템을 말함 

2.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 실시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지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 2백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지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이후부터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과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완료했다.
- 또한 지난해에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미리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완 개선한 바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우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고지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은행·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주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 기간 중 중앙과 지방에서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 새주소 체험수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국민들이 길 찾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계획

- ◇ '11.7월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12년부터 전면 사용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 추진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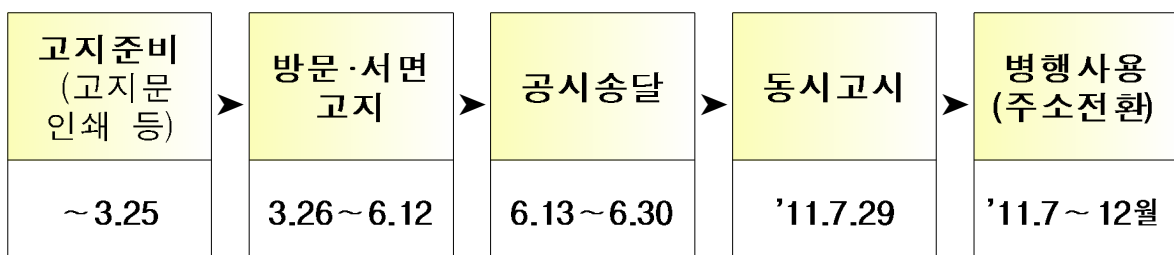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일제고지 '11.3.26~6.30/ 동시고시 7.29
- 대상지역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일제고지·고시
- 고지대상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3,200만명
- 고지방법 : 통·이장 등을 통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방문전달
※ (고지절차) 방문(2회이상)고지 → 서면(등기우편)고지 → 공시송달

□ 고지·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지번)과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도로명주소의 부여일 및 그 부여 사유
- 고지사항의 정정 절차 및 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
-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전환계획 등

□ 추진일정



※ 도로명주소 정정 및 고지 등의 이의처리 기한(7.8) [☞](#)

3.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계약 편리해진다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정보화 사업 발주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지침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 현재, 정보화사업 계약은 30여 개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 행안부는 이처럼 복잡한 현재의 구조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확인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 발주자의 관행이나 재량권으로 인해 IT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발주자가 작성하는 제안 요청서(RFP)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IT기업의 용역과 업량 증가로 인한 수익악화 및 납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 사전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분석·설계 산출물까지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는 전문적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 둘째, 국내 중소 IT기업을 지원하고, IT기업 간 가격 보다는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 HW 및 SW 도입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배점 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구축시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SLA를 적용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 아울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위원Pool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구축하고,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평가위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위원의 경력, 자격, 특허 등을 1차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Pool의 전문성 검증 예정

□ 셋째, 대·중소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 요건을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긴급공고 기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별 긴급공고 기간 : 10억미만 15일, 40억미만 20일, 40억이상 30일

※ 일반공고(40일) 비율 : (중앙행정기관) 4.9% (지자체) 3.9% (공공기관) 19.6%

-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비율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승인 시 직접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발주자가 하도급 실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일원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11.3월말까지 마련하여 정부, IT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11.6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4.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 행안부,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계획 발표 －

◆ 움푹 팬 도로, 고장난 가로등, 위태롭게 걸려 있는 광고물
..., 출퇴근길에 흔히 보는 광경이지만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다.

◆ 그러나 이젠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신고·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우선 거리에서 고쳐야 할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App)을 구동시켜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덕분에 추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에 출동·조치 후,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바로 시스템에 등록한다.

(사무실로 돌아가 결과를 입력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One-Stop 처리!!)

③ 신고자에게 알람 메시지가 도착한다.

④ 신고자는 언제 어디서든,
그 결과를 현장사진과 함께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즉,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하기를 기다렸으나,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컴퓨터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국민들의 손안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들도 이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Smart)”질 필요가 생겼다.

-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전자정부』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 >

구 분	유 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국 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 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아젠다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 민원24·홈택스·나라장터·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한편,
- 이동성·카메라·위치기반·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등 기존 PC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대거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를 구축하고, 미아·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진·홍수·산사태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구제역 등 가축 질병관리 전과정(예방, 예찰, 통제,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최신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 지원 및 이동 중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한편,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사이버 협업일터 등 「디지털 행정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도입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 세금 및 공과금 등 공공기관에서 제각각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통합·일괄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알리미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을 위해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 스마트폰 도난·분실, 악성코드 감염, 무선구간 해킹 등 신규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보안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기존 전자정부 추진 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UN전자정부지수(1위) ↔ 글로벌 SW기업(삼성SDS 56위, 안철수연구소 361위)

5. 3월부터 다문화가정 집에서 직접 정보화교육

- IT에 좀 더 익숙한 결혼이민자들이 IT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월 11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 다문화 IT방문지도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 이번에 선발된 ‘IT방문지도사’는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11개국에서 온 58명의 결혼이민자로, 3월부터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원한다.
- 이날 행사는 IT방문지도사에게 위촉장 수여, IT방문지도사 선서 및 활동각오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날 참석한 빠트빠타르양흐토야(몽골, 여)씨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로써, IT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역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문화 IT 방문지도사를 통한 결혼이민자 정보화 지원

□ 개 요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전국 집합교육장(29개)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교육장에서 원거리 거주자는 정보화교육 기회 적음
- 가정방문 또는 출신국가별 소그룹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 ※ '10.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수는 181,671명, 매년 15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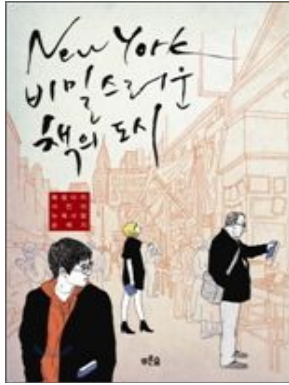
□ 추진내용

- 한국어와 IT 기본소양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전문교육을 통해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58명)
 - 선정기준 : IT지식, 유사활동 경력, 봉사정신, 활동지속 여부 등
 - 양성교육 : IT전문교육, 한국어이해, 다문화가족 및 자녀이해 등(70시간)
- 동일 출신국 가정(330 가정)을 방문,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 조기정착 Know-how 등에 대한 컨설팅 역할 수행
- 정보화교육용 다국어 교재(중국어·베트남어 등) 제작·보급 및 PC미보유 가정의 경우 '사랑의 그린PC' 우선 보급

□ 방문지도사 선발현황

구분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타이완	키르기스스탄	태국	네팔	스리랑카	계
서울	14	2	1	4	-	-	1	-	-	-	-	22
인천	5	-	-	1	-	-	-	-	-	-	-	6
경기	13	2	1	8	1	1	-	1	1	1	1	30
계	32	4	2	13	1	1	1	1	1	1	1	58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뉴욕, 비밀스러운 책의 도시

저자명 : 서진

출판사 : 푸른숲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292

가 격 : 13,500원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로 한겨레문학상(2007)을 수상한 작가 서진의 첫 번째 여행 에세이 《뉴욕, 비밀스러운 책의 도시》(부제: 북월더러 서진의 뉴욕 서점 순례기).

이 책은 83+4일 동안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51개의 서점을 순례한 이야기에, 세 명의 주인공이 한 권의 책을 손에 얻기 위해 서점을 찾아다니는 픽션이 결합된 독특한 여행 에세이다. 서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논픽션과 픽션을 넘나들며 책의 의미를 둘러본 이 책은 진정한 여행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83+4Days 북러버(Book Lover)들의 성지 뉴욕의 서점 & 책 이야기 : 종이책, 가장 인간적이고 문화적이고 아름다운 지식에 대한 추억

N. E. W. Y. O. R. K. 뮤지컬, 소호, 첼시, 뉴욕컬렉션, 우디 앨런, 폴 오스터……. 모든 현대적인 것, 가장 문화적인 것의 중심지 뉴욕. 뉴욕커와 아티스트들은 한번 뉴욕에 정착하면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뉴욕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비밀이 뉴욕에 있는 것일까? 영화, 패션, 미술, 뮤지컬 등 화려한 문화상품이 뉴욕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뉴욕을 뉴욕답게 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점이다. 유럽의 서점들은 고풍스러운 맛이 있지만, 다양한 개성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서점들은 바로 그곳, 뉴욕에 있다!

뉴욕은 북러버들의 성지이다. 5,60년대 초 14번가와 9번가 사이에 서점들이 뽀뽀이 들어차 있어서 북 로(Book Row)라고 불렀던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서점들이 거리 곳곳에 때론 비밀처럼, 때론 안식처처럼 숨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서점은 사라지고 있다.

《뉴욕, 비밀스러운 책의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상품인 책,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 서점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이 책은 과거에 대한 추억, 사라져가는 문화 행위에 대한 기록이다. 동네 서점에 들러 서가를 어슬렁거리며 느긋하게 책을 고르고,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장을 넘기는 행위. 혹시 예기치 못한 책, 나만의 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 하지만 이제는 옛날 일들이 되어버린 이 모든 즐거움. 이 책은 우리가 영영 잊어버릴지도 모를 아주 오래된 즐거움에 관한 애정 어린 기록이다.

책만큼 읽기가 편하지 않더라도 가볍고 수백 권의 책을 담을 수 있다면, 적당한 가격에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갖고 있다면, 문서 파일과 PDF 파일, MP3 파일을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정말 요구 사항이 많지만) 나는 종이책을 가차 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이상 여행 가방에 책을 담지 않고 책장에도 책을 꽂아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손으로 넘겨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책을 사랑한다. 종이책은 그 자체로서 기기와 콘텐츠의 역할을 하는 완전한 문화상품이다. 배터리나 플레이어가 필요 없다. 오래가고 휴대하기 쉬우며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래서 다시는 책을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책은 꾸역꾸역 늘어만 간다. 언젠가는 헤어질 오래된 연인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 종이책에 대한 사랑은 급격하게 식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끝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메 모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1년 4월 10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 606-5021 / 팩스 (042) 606-5029